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897
----------	------

제출년월일 : 2016.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대행관리를 위해 조례 전부 개정 필요
 - 「하수도법」 제 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는 삭제되고 「하수도법」 제 19조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신설(2013. 2. 2. 개정)
- 법률에 정한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공공하수도시설 대행업자 선정 입찰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하수처리시설 대행 계약만료일 : 2017. 3. 31.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

※ 일부 하수관로 점검, 중계펌프장 등도 현재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행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 변경 필요

나.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관리대행에 대한 계약방법, 계약기간 근거 마련(안 제3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에 따르도록 함.

1. 단순관리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 대행
2. 복합관리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3. 대행기간 :
 - 가. 단순관리대행 : 대행기간은 5년 이내(성과평가 결과 고려하여 1회 갱신가능)
 - ※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갱신여부 심의
 - 나. 복합관리대행 : 5년 이상 ~ 20년 이내.

- 개정조례안 : 불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불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6. 09. 13. ~ 2016. 10. 04. (2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불임5
 - 방침결정문 : 불임6

< 붙임 1 >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하수도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및 중계펌프장 등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하수도시설은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대행의 범위) ① 관리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

1.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오수중계펌프장, 우수토구 펌프장 및 하수관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하·폐수, 하수슬러지의 처리 및 공정관리
4. 유입 하·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
6.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 등에 관한 사항
7. 방류수 및 방류관로 관리
8.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
9. 공공하수도시설의 환경정비(조경포함)
10.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적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

11. 하수슬러지의 운반 및 소각시설 운영, 반입량 계측 및 소각재의 운반 처리
 12.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 공공하수도시설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관리대행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수수료 등) 관리대행 수수료는 시장이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정한다.

제8조(점검 등)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 체결된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안산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소관 실·과		자치행정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하수과장 박 명 섭
	계장·팀장 직위·성명	하수처리계장 김 중 식
자	담당자 성명·전화	양 승 열 (행정 258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명칭)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하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안산시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신 설></p> <p>제2조(관리·운영) ① <u>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안산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할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u></p>	<p>(명칭) 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하수도법</u>』 제19조의2에 따라 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u>공공하수도시설</u>”이란 <u>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및 중계펌프장 등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u></p> <p>제3조(관리·운영) ① <u>공공하수도시설은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3조(위·수탁)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위·수탁 당사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오수중계펌프장, 우수 토구펌프장 및 간선관거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하·폐수, 하수슬러지의 처리 및 공정관리 4. 유입 하·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5. <삭제 2006.9.28> 6.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 7.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 8. 방류수 및 방류관거 관리 9.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 10.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환경정비(조경포함) 11.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12. 하수슬러지의 운반 및 소각시설 운영, 반입량 계측 및 소각재의 운반 처리 13.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4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p>	<p>제4조(관리대행의 범위) ① 관리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오수중계펌프장, 우수토구 펌프장 및 하수관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하·폐수, 하수슬러지의 처리 및 공정관리 4. 유입 하·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 6.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 등에 관한 사항 7. 방류수 및 방류관로 관리 8.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 9. 공공하수도시설의 환경정비(조경포함) 10.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적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11. 하수슬러지의 운반 및 소각시설 운영, 반입량 계측 및 소각재의 운반 처리 12.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5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 공공하수도시설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절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조(위·수탁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위·수탁 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제6조(위탁수수료등)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시장이 원가분석등을 통하여 정한다.</p> <p>제7조(점검 등)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관리대행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p>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제7조(대행수수료 등) 관리대행 수수료는 시장이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정한다.</p> <p>제8조(점검 등)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897
----------	------

제안년월일 : 2016년 10월 27일
제안자 : 도시환경위원장

수정이유

- 「하수도법」에 따른 관리대행의 계약과 해지 부분에 대한 당사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칙안도 입법체계에 적합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에서 당사자간의 범위와 안 제6조제1항에서 계약의 해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공무원이 파견하여 근무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부칙 안 제2조에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를 입법체계에 적합하게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함.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당사자 간” 을 “시와 관리대행업자 간” 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을 “정기점검” 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 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를 “관리대행 시설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안 제2조 중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를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위·수탁)</p> <p>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위·수탁 당사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오수중계펌프장, 우수 토구 펌프장 및 간선관거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하·폐수, 하수슬러지의 처리 및 공정관리 4. 유입 하·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5. <삭제 2006.9.28.> 6.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 7.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 8. 방류수 및 방류관거 관리 9.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 10.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환경정비(조경포함) 11.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적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12. 하수슬러지의 운반 및 소각시설 운영, 반입량 계측 및 소각재의 운반 처리 13.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4조(관리대행의 범위)</p> <p>① 관리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u>당사자</u> 간 계약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오수중계펌프장, 우수토구 펌프장 및 하수관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하·폐수, 하수슬러지의 처리 및 공정관리 4. 유입 하·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 6.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 등에 관한 사항 7. 방류수 및 방류관로 관리 8.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 9. 공공하수도시설의 환경정비(조경포함) 10.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적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11. 하수슬러지의 운반 및 소각 시설 운영 12.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u>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u>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4조(관리대행의 범위)</p> <p>① 관리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u>시와 관리대행업자</u> 간 계약으로 한다.</p> <p>1. ~ 12.(현행과 같음)</p> <p>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u>정기점검 및 수시점검</u>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위·수탁 협약의 해지)</p> <p>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위·수탁 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공하수도 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제7조(점검 등)</p> <p>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6조(계약의 해지)</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관리대행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p>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제8조(점검 등)</p> <p>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 체결된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과 「안산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p>	<p>제6조(계약의 해지)</p> <p>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점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관리대행 시설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 체결된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과 「안산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p>